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31	건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대학교총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0. 18.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법학과에 부교수로 임용되어 현재는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논문 게재

원고는 2022. 3. 31. B대학교 C연구소(이하 'C연구소'라 한다)에 'D'(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제출하였고, 위 연구소는 2022. 4. 16.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뒤 2022. 4. 22. 'E 제16권 제1호'에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 경위

이 사건 논문이 게재되자 그 내용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재직 중인 연구원 F가 작성한 'G' 중 보고서 6건(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신고가 C연구소에 접수되었다. C연구소는 2023. 1. 17. B대학교 연구윤리감사실(이하 '연구윤리감사실'이라 한다)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위반 사실을 통지하였다.

연구윤리감사실로부터 이 사건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위임 받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본조사위원회는 2023. 12. 28. 이 사건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를 연구윤리감사실에 보고하였다. 연구윤리감사실은 2024. 1. 3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뒤, 2024. 5. 3. B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24. 8.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하였다.

3. 위원회의 판단

연구윤리감사실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알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등 제증거와 혐의자의 진술, 의견서 등 내용을 검토한 징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징계혐의자(원고)는 “D” (E, 2022. 4.) 논문에 대하여 「B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4



조의 연구부정행위(표절)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징계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규정한 제정상을 참작하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 점, 다만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논문의 게재를 철회한 점, 해당 논문으로 승진, 연구비 등의 혜택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별표1] 1. 성실의무위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성실의무위반에 의거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피고는 2024. 8. 12. 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24. 9.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성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각 보고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재직 중인 연구원 F가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이고 그 내용도 중국 법원 판례에 대한 번역물로



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주를 달아 출처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중국 법원 판례를 번역한 것이며, 판례의 결론이나 이에 대한 의견 부분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유사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에게는 표절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에 따른 정당한 인용 또는 이용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논문의 게재를 철회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작성자인 F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 사건 논문의 내용 중에는 중국 판례의 번역 부분이 많으므로 표절검사프로그램의 형식적인 표절률에 근거하여 표절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등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작성으로 승진이나 연구비 지원 등의 이익을 받지 아니한 점, 살아오면서 형사 또는 징계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점, 정년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다방면의 공익봉사활동을 해 온 점, 징계처분으로 인한 상훈자격 상실, 공직취임 제한, 변호사 재개업 불허 우려 등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 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순환을 가로막아 피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 51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원고의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한 행위가 B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지침은 '표절'이란 ①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목), ②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나목) ③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목)로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각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연구원 F가 작성한 것으로, F는 이 사건 각 보고서에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



이 아님을 밝힌다'거나 '본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활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였다. F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구성을 사건의 쟁점, 판시사항,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시사점으로 항목을 나눠 작성하였는데, 중국 법원 판례를 단순히 번역한 데 그치지 않고 핵심 위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고, 시사점 부분에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과 논평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7조 제3호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을, 같은 조 제4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외국 판례의 번역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다) 이 사건 각 보고서는 F가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연구원으로서 업무상 작성한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9조,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해당하고 '공공누리'¹⁾의 제4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로운 인용이 가능하나,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B대학교의 자체 표절 검사 시스템인 'H'는 이 사건 논문의 표절률을 51%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논문의 기재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기재를 직접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문장 그 자체로 동일하고 오기까지 동일한 경우도 있는바,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가 출처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을 밝히는 각주를 기재한 횟수는 6회에 불과한데 비해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이다.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해 판단한 본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비교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 원고는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중국에서 번역물을 입수하였고 다른 박사로서 하여금 번역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와 번역물을 대조하게 하였으며 그 박사가 최종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참작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표절한 것이 아니고 가사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논문의 기재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기재를 직접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문장 그 자체로 동일하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이므로 표절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원고가 타인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거나 타인이 만든 수정본을 참작하여 이 사건 논문을 만들었더라도 그 결과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에게 표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과실은 인정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고서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저작권법 제28조, 제35조의5에 따라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 등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인용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B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고 승진이나 연구비 등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은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는 이미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각주를 기재하여 출처를 표시하였고 일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고 이는 용인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출처를 표시한 부분보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이 월등히



많으며 이 사건 각 보고서의 오기까지도 이 사건 논문에 그대로 인용된 사정까지 더하면, 이를 경미한 실수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본조사위원회
회의 조사위원들도 모두 원고의 위반 정도를 '비교적 중대'로 판단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부터 견책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원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한 처분을 받았는
바,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 의무는 교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업인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대학 교수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대학교와 교수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표절은 건전한 학문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을 비교형량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건희

 판사 이동진

 판사 임현준



별지1

관계 법령 등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부작위 · 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 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소극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 행위의 신고 · 고발 의무 불이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사. 부정청탁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별표 2와 같음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교

1. 제1호 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자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2.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 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 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 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1호 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8. 제1호 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 가목을 적용한다.
9. 제1호 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자.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2. 제1호 자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 B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제20조에서 제21조를 참조한다.
 - 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20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



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03

- ②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상 -



별지2

원고 논문 일부 발췌	비교대상 보고서 일부 발췌
D [E(2022년 4월) 131~163면]	1.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따른 침해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판결
요약 [131p] ‘I’ 상표권 침해 사건은 피고들의 계쟁 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 한 상태였는지, 세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침해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민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7p]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계쟁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驰名)’ 한 상태였는지, 세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침해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민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1. 서론 [132p] 최근 중국의 ‘I 상표권 침해 사건’ 등과 같이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과실이 분명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고 침해로 인한 결과가 엄중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 [8p] (3) 민사적 책임 고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1,2,3이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과실이 분명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고 그 정황이 악랄하며 침해로 인한 결과가 엄중한 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Ⅲ. 중국 상표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검토 1. ‘I’ 상표권 침해 사건: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따른 침해의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1.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35p-137p] J社(이하 ‘원고1’)¹⁰⁾는 K에 제9류 휴대폰·화상전화·무선전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I’ (이하 ‘등록상표’) 상표를 출원하여 L에 등록받았고, 2016년 11월 27일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3p-4p] 원고1은 K에 제9류 휴대폰·화상전화·무선전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I” (이하 ‘등록상표’) 상표를 출원하여 L에 등록받았고, 2016년 11월 27일에 제11류 전등·가스레인지·냉장고·배기팬·주방용후드·수도꼭지·욕조·태양열온수기·소독설비·난방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M” 상표를 양수받았다. 2016년 3월, 원고1,2는 온라인을 통해 “생활 중의



에 제11류 전등·가스레인지·냉장고·배기팬·주방용후드·수도꼭지·욕조·태양열온수기·소독설비·난방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M’ 상표를 양수받았다. 2016년 3월, 원고1, 2는 온라인을 통해 ‘생활 중의 예술품(做生活中的艺术品)’ 콘셉트의 제품 라인 ‘N’ 를 발표하였다.¹¹⁾

한편 광둥성 중산(中山)시에 소재한 O有限公司(이하 ‘피고1’)는 소형가전 제조·R&D를 사업영역으로 하는 기업으로, P에 제11류 온수기·가스레인지·냉장고·취사도구 등의 가전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계쟁 상표’ 를 출원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당해 계쟁 상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R에 등록되었다.¹²⁾

2018년 11월 13일 계쟁 상표의 무효화¹³⁾에 성공한 원고는 피고1, 2와 피고2의 대표이사 형제인 S(이하 ‘피고3’) 및 계쟁 제품이 판매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社(이하 ‘피고4’)를 상대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이하 ‘법원’ 이라 함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국의 법원을 말함)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1, 2는 본 소송에서 피고들의 침해행위 중지 및 각종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피고1의 웹사이트에 사과문 게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5천만 위안과 권리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 414,198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예술품做生活中的艺术品” 콘셉트의 생태계 제품 라인 “N” 를 발표하였다.

한편 광둥성 중산(中山)시에 소재한 O有限公司(이하 ‘피고1’)는 소형가전 제조·R&D를 사업영역으로 하는 기업으로, P에 제11류 온수기·가스레인지·냉장고·전기취사도구 등의 가전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Q” (이하 ‘계쟁 상표’) 상표를 출원하고,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당해 계쟁상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R에 등록되었다.

2018년 11월 13일, 계쟁상표 무효화에 성공한 원고는 피고1,2와 피고2의 대표이사 형제인 S(이하 ‘피고3’) 및 계쟁제품이 판매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T社(이하 ‘피고4’)를 상대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1,2는 본 소송에서 피고들의 침해행위 중지 및 각종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피고1의 웹사이트에 사과문 게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5천만 위안과 권리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비용 414,198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vs. 피고의 계쟁상표]	
원고의 등록상표 [] 제9류: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및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화상전화, 휴대전화, 무선전화 등	피고의 계쟁상표 [] 제11류: 냉장고, 주방용 후드, 전기취사도구, 전기하터, 전기압력밥솥, 선풍기, 가스레인지, 온수기 등
출원 [] 등록 []	출원 [] 등록 []

본 사안은 피고들의 계쟁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⁷⁾하였는지 및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시 침



[원고의 등록상표 vs. 피고의 계쟁상표]	
원고의 등록상표 제9류: 노드백,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및 컴퓨터 게임 제11류: 냉장고, 주방용 후드, 전기후사도구, 전기히터, 소프트웨어, 회상전원, 휴대용 무선전화 등	피고의 계쟁상표 제9류: 노드백,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및 컴퓨터 게임 제11류: 냉장고, 주방용 후드, 전기후사도구, 전기히터, 전기압력밥솥, 선풍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출원: [] 등록: []	출원: [] 등록: []

본 사안은 피고들의 계쟁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¹⁴⁾하였는지의 여부 및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위가 성립할 경우에,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모가 타당한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10)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전자제품·모바일의 기술개발과 생산 및 서비스 사업을 하며, U社(이하 ‘원고2’)는 2010년 8월에 설립되어 모바일 기술·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개발, 가정용 전자기기·통신설비·전자제품의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11) ‘N’는 ‘V’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기밥솥·보온컵·인덕션·스탠드선풍기·에어컨·전기난방기 등의 제품군을 포함한다. 원고1, 2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전 세계에서 I 제품의 판매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W有限公司(이하 ‘피고2’)는 피고1이 등록한 위의 두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수여받았다. 피고2의 대표이사인 X은 2008년 6월 10일에 완성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016년 9월에 ‘Q’저

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모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

J有限公司(이하 ‘원고1’)는 2010년 3월에 설립되어 가전·전자제품·모바일의 기술개발과 생산 및 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하며, U有限公司(이하 ‘원고2’)는 2010년 8월에 설립되어 모바일 기술·컴퓨터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개발, 가정용 전자기기·통신설비·전자제품·문체용품의 도·소매를 사업영역으로 하는 기업이다.

N”는 “V”를 지칭하는 용어로, 전기밥솥·보온컵·인덕션·스탠드선풍기·에어컨·전기난방기 등의 제품군을 포함한다. 원고1, 2는 2010년 8월 2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전 세계에서 I 제품의 판매 및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W有限公司(이하 ‘피고2’)는 피고1이 등록한 위의 두 도메인에 대한 사용권을 수여받았다. 피고2의 대표이사인 X은 2008년 6월 10일에 완성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016년 9월에 “Q”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2는 사명을 Y로 변경하였다.

2017년 10월 24일, 원고는 피고1의 계쟁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년 8월 8일 상표평심위원회는 계쟁상표가 중국 상표법이 규정하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정황’에 해당한다며 무효심결을 선고하였다.8) 더불어 원고



작권을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2는 사명을 ‘Y’ 로 변경하였다

13) 2017년 10월 24일에 원고는 피고1의 계쟁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년 8월 8일 상표평심위원회는 계쟁 상표가 중국의 상표법(이하 ‘상표법’ 이라 함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중국의 상표법을 말함)이 규정하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정황’ 에 해당한다며 무효심결을 선고하였다. 더불어 원고는 2018년 9월 10일 Z에 피고1이 등록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메인이 악의적 등록 및 사용에 해당한다며 도메인의 이관을 요구하였고, 2018년 11월 19일에 위의 두 도메인을 원고에게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14) 중국의 상표는 인지도 및 저명성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 로 구분된다.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지칭하며, ‘周知商标’ 라고도 한다. 저명상표는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 AA, 중국지식재산권법, AB, 2011, 203면·210면.

1.2. 법원의 판결

1.2.1. 중국인민법원의 판결¹⁵⁾ [137p]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의 등록상표 침해를 인정하여,¹⁶⁾ 피고1, 2에게 계쟁 제품의 제조·판

는 2018년 9월 10일 Z에 피고1이 등록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도메인이 악의적 등록 및 사용에 해당한다며 도메인 이관을 요구하였고, 2018년 11월 19일 위의 두 도메인은 원고에게 이관되기로 결정되었다.

IV. 시사점 [8p]

중국에서는 상표의 인지도 및 저명성에 따라 저명상표(驰名商标), 주지상표(著名商标), 유명상표(知名商标)로 구분되는데,²¹⁾ 이중 저명상표(Well-known Trademark)란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지칭하며, “周知商标” 라고도 한다. 저명상표는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²²⁾

22) AA “중국지식재산권법” AB, 2011, 203, 210면

1. 중국인민법원의 판시사항⁹⁾ [4-5p]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의 등록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¹⁰⁾ 피고1,2에게



매의 금지 및 계쟁 표지의 삭제와 함께 허위 광고의 금지 및 연속 1개월간 각종 사이트에 사과문의 게재를 명령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5천만 위안과 침해행위의 저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 414,198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¹⁷⁾ 또한 피고2의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피고3에게는 피고1, 2의 침해행위의 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위 손해배상액을 함께 부담하라고 선고하였다.¹⁸⁾

15) (2018)苏01民初3207号 민사판결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2019년 6월 12일 선고.)

16) <상표법> 제57조 제3호, =제6호, 제7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17)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
상표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행위의 저지에 사용한 합리적 비용이란,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증거취득을 진행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국가 유관 부문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 범위에 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국

계쟁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계쟁표지 삭제와 함께 허위광고 금지 및 연속 1개월간 각종 사이트에 사과문 게재를 명령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5천만 위안과 침해행위 저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 414,198위안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¹¹⁾ 또한 피고2의 도메인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피고3에게는 피고1,2의 침난징시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의 등록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해행위 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위 손해배상액을 함께 부담하라고 선고하였다.

9) (2018)苏01民初3207号 민사판결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2019년 6월 12일 선고.)

10) 《상표법》 제57조 제3호, 제6호, 제7호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여 타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타인의 등록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11)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7조
상표법 제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행위 저지에 지불한 합리적 비용이란, 권리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증거취득을 진행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가 유관 부서 규정에 부합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의 범위 내로 산정할 수 있다. 18)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표는 저명함이 인정되므로, 피고1, 2가 원고들의 허가 없이 전기 취사도구 등의 제품에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것은 동일한 지정상품이 아닐지라도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상표법 제13조).	국가 유관부문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범위에 산정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국가 유관 부서 규정에 부합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 내로 산정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원고의 상표는 저명(驰名)함이 인정되므로, 피고1,2가 원고들의 허가 없이 전기취사도구 등의 제품에 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것은 동일한 지정상품이 아닐지라도¹²⁾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다.¹³⁾
1.2. 법원의 판결 1.2.2. 고급인민법원의 판결¹⁹⁾ [137p-138p]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이 계쟁 상표를 등록할 당시에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驰名)’한 상태였는지 및 세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침해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민사적 책임의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의 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19) (2019)苏民终1316号 민사판결(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19년 12월 31일 선고)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⁹⁾ [7p]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의 계쟁상표 등록 당시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저명(驰名)’한 상태였는지, 세 피고의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침해가 성립된다면 이들의 민사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저명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19) (2019)苏民终1316号 민사판결(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19년 12월 31일 선고.)
1.2.2.1.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 여부 [138p]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원고의 상표는 피고가 계쟁 상표를 등록할 당시 이미 일반대중이 널리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저명함이 인정되며,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⁹⁾ 1) 등록상표 침해 여부 [7p] 고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원고의 “I” 상표는 피고가 계쟁상표 “Q”를 등록할 당시 이미 일반대중이 널리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저명함



ii) 피고1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다른 품목에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자신의 경영 장소·웹사이트·Wechat 공식계정·계쟁 제품 등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는, 저명상표의 시장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일반대중을 오인·혼동하게 하여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iii) 피고들이 사용한 ‘AC’, ‘AD’ 도메인 역시 저명상표를 모방 또는 음역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iv) 피고3이 피고1, 2가 침해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 조건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의 방조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²⁰⁾

20)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보유한 97개의 상표 중, ‘Q’, ‘AE’, ‘AF’, ‘AG’, ‘AH’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AJ’, ‘AK’ 등의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였던 바, 악의적 고의 침해(惡意侵權)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1.2.2.2. 민사적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139p]

요컨대, 고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1, 2, 3이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과실이 분명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고 그 정황이 악랄하며 침해로 인한 결과가 엄중한 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고들의 경제적 손실 5천만 위안과 침해행위의 저지비용 414,198위안을 인정하는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였다(상표

이 인정되며, ii) 피고1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다른 품목에 “I” 상표를 모방한 “Q” 상표를 자신의 경영 장소·웹사이트·Wechat 공식계정·계쟁제품 등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는 저명상표의 시장 명성市場勝譽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일반 대중을 오인·혼동하게 하여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미치는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고급인민법원은 iii) 피고들이 사용한 “AC”, “AD” 도메인 역시 저명상표 “I” 를 모방 또는 음역한 것으로, 일반대중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iv) 피고3이 피고1,2가 침해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조건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방조행위를 구성한다고 설시하였다.

특히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보유한 97개의 상표 중, “Q”, “AE”, “AL”, “AF”, “AG”, “AH”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AI”, “AJ”, “AK” 등의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였던 바, 악의적 고의침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⁹⁾

(3) 민사적 책임 [8p]

고급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1,2,3이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과실이 분명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고 그 정황이 악랄하며 침해로 인한 결과가 엄중한 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고들의 경제적 손실 5천만위안과 침해행위 저지비용 414,198위안을 인정하는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선고하였다.²⁰⁾



<u>법 제63조 제1항, 제3항)²¹⁾</u> 21) F, “상표의 저명(馳名)성 판단에 따른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 3, 8면.	20) 《상표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사용허가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서 1배 이상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비용 (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1.2.2.3. 판결의 검토 [139p-140p] 본 사안은 I가 비악적인 성장을 하며 <u>해당 상표의 인지도도 급상승함에 따라, “I” 상표와 다른 지정상품에 출원된 “계쟁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쟁 상표”출원 당시 “I”의 저명성이 관건이었다. 저명상표는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u>²²⁾ <u>저명상표에 대한 침해 발생시 권리자는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용 일지라도 해당 상표권에 대한 보호 청구가 가능하며,</u>²³⁾ 법원은 관련 공중에게 당해 상표가 알려진 정도, 당해 상표의 사	IV. 시사점 [8-10p]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대륙의 실수’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I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u>해당 상표의 인지도도 급상승함에 따라, “I” 상표와 다른 지정상품에 출원된 “Q”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Q”출원 당시 “I”의 저명성이 관건이었다.</u> <u>저명상표는 기업의 상호 및 도메인으로서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가 광범위하고 배타성이 강한 권리에 속한다.</u>²²⁾ <u>저명상표에 대한 침해 발생 시 권리자는</u>



용 지속 기간,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의 지속 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당해 상표가 유명하게 된 기타 요소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할 수 있다.²⁴⁾ 단, ‘개별인정(个案认定) 및 피동보호(被动保护)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명성 여부를 인정하는데, 당사자가 저명상표의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한 먼저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²⁵⁾

본 사안에서 피고들이 ‘I’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사용하고, 사명에도 ‘I’를 표기하며, 원고와 유사한 광고문구 및 배색조합을 활용한 점은 유명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고자 한 악의적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사안은 피침해 상표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저명상표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그에 버금가는 상표의 저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저명상표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2) AA, 앞의 책, 210면

23) <상표법(商標法)> 제13조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용 일지라도 해당 상표권에 대한 보호 청구가 가능하며,²⁴⁾ 법원은 관련 공중에게 당해 상표가 알려진 정도,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의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당해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 받은 기록, 당해 상표가 유명하게 된 기타 요소에 따라 상표의 저명성을 판단할 수 있다.²⁵⁾

단, 개별인정(个案认定) 및 피동보호(被动保护)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당사자 요청에 의하여 저명성 여부를 인정하는 바, 당사자가 저명상표의 보호를 주장하지 않는 한 먼저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²⁶⁾

또한 피고들이 “I”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사용하고, 사명에도 “I”를 표기하며, 원고와 유사한 광고문구 및 배색조합을 활용한 점은 유명상표의 인지도에 편승하고자 한 악의적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피침해 상표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저명상표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그에 버금가는 상표의 저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저명상표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꽤 크며



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24) <상표법(商標法)> 제14조: 저명성 판단 요건 저명상표(馳名商標)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관련 상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인정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은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공중에게 당해 상표가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의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25) AM, 중국상표법, AN, 2018, 248~249면	22) AA “중국지신재석권법” AB, 2011, 203, 210면 24) 상표법 제13조에 관한 자세한 법률구문은 본문 마지막의 “붙임” 참조. (붙임 상표법 제13조: 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위조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거나 저명상표 등록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25) 상표법 제14조에 관한 자세한 법률구문은 본문 마지막의 “붙임” 참조. (붙임 상표법 제14조 저명성판단요건: 저명상표(馳名商標)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관련 상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인정이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저명상표 인정은 아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공중에게 당해 상표가 알려진 정도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3) 당해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 의 지속기간 및 정도와 지리적 범위 26) AM “중국 상표법”, 2018, 248-249면
IV. 결론 [159p] 본 판례는 피침해 상표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저명상표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그에 버금 가는 상표의 저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저명	IV 시사점 [9p] 이처럼 본 사안은 피침해 상표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저명상표가 아닐지라도, 권리자가 그에 버금가는 상표의 저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저명



상표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상표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꽤 크며,
요약 [131p] ‘AO’ 상표권 침해 사건은 등록상표와의 유사 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 피고1, 2, 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1, 2, 3에게 손해배상액의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과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	“AO”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 “AO” 상표권 침해 사건- 쟁점 [1p] 등록상표와의 유사 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적정 손해배상액 수준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 법원의 판결 [3p]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이하 “기층인민법원”)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계쟁제품 및 관련 포장재 폐기처분, 계쟁제품을 소개·홍보하는 웹사이트 삭제, 계쟁제품이 판매된 (인터넷주소 3 생략)의 플래그십스토어 링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791만 위안과 침해저지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2,3에게 손해배상액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에 대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⁹
Ⅲ. 중국 상표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검토 2. ‘AO’ 상표권 침해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 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2.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40p-141p] AQ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상표①’, ‘상표②’,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1. 사건의 경과 [2p] AP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 (이하 “상표①”), “” (이하 “상표②”), “” (이하 “상표③”), “” (이하 “상표④”) 상표권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⁵⁾을 체결한 스포츠 의류 기업이다.⁶⁾ 원고는 AR(이



‘상표③’, ‘상표④’ 상표권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스포츠 의류 기업이다.²⁶⁾ 원고는 AR(이하 ‘피고1’)이 생산·판매하고, AS(이하 ‘피고2’)가 운영을 담당한 AT(이하 ‘피고4’)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신발의 ‘사용표지①’, ‘사용표지②’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경쟁상표 및 사용표지		
상표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	경쟁상표	사용표지①	사용표지②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들의 사용 표지 ‘AU’, ‘AV’가 원고의 등록상표 ‘AO’, ‘AW’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및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26) 원고 ‘AP 유한공사’는 2016년 6월 6일 및 10일에 ‘AO’ 상표 권리자인 싱가포르 ‘AX’와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표 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의 독점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서면으로 해지를 협의할 때까지며, 계약의 내용에는 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 대륙 내에서 원고의 명의로 소송·중재·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고,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2. 법원의 판결²⁷⁾ [141p]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이하 ‘기층인민법원’) 피고1, 2, 3의 상표권 침해를

하 “피고1”)가 생산·판매하고, AS(이하 “피고2”)가 운영을 담당한 AT(이하 “피고4”)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신발의 “□”, “□□□□” 표지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⁷⁾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경쟁상표 및 사용표지		
상표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	경쟁상표	사용표지①	사용표지②

I 사건의 쟁점 [2p]

본 사안은 피고들의 사용표지 “AU”, “AV”가 원고의 등록상표 “AO”, “AW”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절 여부에 관한 것이다.

6) 원고 “AP 유한공사”는 2016년 6월 6일 및 10일에 “AO” 상표 권리자인 싱가포르 “AX”와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표①,②,③,④의 독점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서면으로 해지를 협의할 때까지며, 계약 내용에는 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 대륙 내에서 원고의 명의로 소송·중재·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고 해당 침해행위의 발생 시기는 협의 체결일 전후 무관하며,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 법원의 판결⁸⁾ [3p]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은(이하 “기층인민법원”) 피고1,2,3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계쟁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계쟁 제품 및 관련 포장재 폐기처분, 계쟁 제품을 소개·홍보하는 웹사이트 삭제, 계쟁 제품이 판매된 (인터넷주소 3 생략)의 플래그십 스토어 링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기충인민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791만 위안과 침해 저지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 2, 3에게 손해배상액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과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 기충인민법원은 피고1, 2, 3의 원고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정황으로 나누어 심리하였다. 27) (2017)京0102民初2431号 민사판결(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선고)	인정하여 계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계쟁제품 및 관련 포장재 폐기처분, 계쟁제품을 소개·홍보하는 웹사이트 삭제, 계쟁제품이 판매된 (인터넷주소 3 생략)의 플래그십스토어 링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하였다. 또한 기충인민법원은 원고의 경제적 손실 791만 위안과 침해 저지 비용 41만 위안을 인정하여, 피고1,2,3에게 손해배상액 연대책임을 선고하는 한편 일간지에 침해 사실에 대한 성명을 게재하라고 명령하였다.⁹⁾ 단 기충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유명상품 특유포장·장식(知名商品特有的包装、装潢) 침해와 피고4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¹⁰⁾ 기충인민법원은 피고1,2,3의 원고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정황으로 나누어 심리하였다. 8) (2017)京0102民初2431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서성구 인민법원 선고.)
2.2.1. 계쟁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141p-142p] 계쟁 제품에 사용된 표지가 적용된 방식은 두 가지로, 피고1, 2가 생산·판매한 신발과 그 포장재에 사용표지②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 쇼핑백·포장상자·품질보증서·제품합격증에 ‘AV(中國)’, ‘AV(中國)有限公司授权’²⁸⁾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충인민법원은 전자가 원고의 상표②, 상표④를 침해하고, 후자가 상표 ③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충인민법원은 전자의 상표②, 상표④의 침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i) 계쟁 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2. 법원의 판결 (1) 계쟁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3p-4p] 계쟁제품에 사용된 표지가 적용된 방식은 두 가지로, 피고1,2가 생산·판매한 신발과 그 포장재에 표지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 쇼핑백(手提袋)·포장상자·품질보증서·제품합격증에 “AV(中國)”, “AV(中國)有限公司授权”¹¹⁾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충인민법원은 전자가 원고의 상표②,④를 침해하고, 후자가 상표③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충인민법원은 전자의 상표②,④ 침해를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i) 계쟁제품이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



한 신발 제품이고, ii) 원고 상표가 비교적 강한 현저함과 높은 인지도(知名度)를 보유하고 있으며, iii) 구성요소·문자 모양·의미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표지가 유사하여 일반 대중이 계쟁 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²⁹⁾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후자의 상표③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피고들의 취급 제품과 원고 상표 지정상품이 모두 신발로 동일하고, ii) 계쟁 제품 및 포장상자·제품합격증에 기업 상호인 ‘AV(中國)’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③과 유사하여 일반대중이 해당 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층인민법원은 ‘AV(中國)’ 중 현저한 부분에 해당하는 ‘AV’ (AY)가 원고 상표③의 ‘AW’ (AZ)와 발음이 동일하고, 문자 모양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28) AV(AY)는 AP의 중문명인 BA(AZ) 발음과 동일하다. ‘AV(中國)有限公司授权’는 ‘BB로부터 권리의 수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9)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호는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란, 피소된 계쟁 상표와 원고의 상표를 서로 비교하였을 경우 그 문자의 모양, 읽을 때의 발음, 함축적 의미나 도형의 구도(图形) 및 색깔 또는 각 요소의 조합 후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거나, 입체적 형상이나 색깔의 조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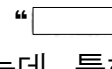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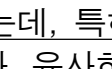
제품이고, ii) 원고 상표가 비교적 강한 현저함(显著性)과 높은 인지도(知名度)를 보유하고 있으며, iii) 구성요소(构成要素)·문자모양(字形)·의미(含义)면에서 양 당사자의 표지가 유사하여 일반 대중이 계쟁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혼동가능성(混淆可能性)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¹²⁾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후자의 상표③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피고들의 취급 제품과 원고 상표 지정상품이 모두 신발로 동일하고, ii) 계쟁제품 및 포장상자·제품합격증에 기업 상호(企业字号)인 “AV(中國)”를 두드러지게 사용(突出使用)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③과 유사하여 일반대중이 해당 제품을 원고가 제공하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기층인민법원은 “AV(中國)” 중 현저한 부분에 해당하는 “AV” (AY)가 원고 상표③의 “AW” (AZ)와 발음이 동일하고, 문자 모양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11) AV(AY)는 AP의 중문명인 BA(AZ) 발음과 동일하다. “AV(中國)有限公司授权”는 “BB로부터 권리수여”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2) 《상표분쟁사법해석》 제9조 제2호는 “상표법(2001년 개정) 제5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상표의 유사란, 피소된 계쟁상표와 원고의 상표를 서로 비교하였을 경우 그 문자의 모양(字形), 읽을 때의 발음(读音), 함축적 의미(含义)나 도형의 구도(图形) 및 색깔 또는 각 요소의 조합



유사할 경우, 일반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그 출처를 원고의 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를 지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 전체적인 구성이 유사하거나, 입체적 형상이나 색깔의 조합이 유사할 경우, 일반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또는 그 출처를 원고의 상표 상품과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를 지칭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2.2. 피고의 웹사이트·인터넷 쇼핑몰에 사용된 표지가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42-143 p] 피고가 온라인에서 계쟁 표지를 적용한 방식은 세 가지로, 피고2가 운영한 AT(인터넷주소 3 생략) 및 BC 플래그십 스토어에 ‘계쟁 상표’ 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 해당 표지를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와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으로 사용한 것, BC 플래그십스토어의 웹사이트 명칭과 기타 위치에 ‘AU’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이다. 이 중 기층인민법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용 행태가 원고의 상표 ②, 상표④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³⁰⁾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피고2가 운영한 BD(인터넷주소 3 생략) 및 BC 플래그십 스토어에 ‘계쟁 상표’ 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상품출처의 기능을 보유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ii) 해당 표지가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 및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으로 표기된 것 역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며, 또한 iii) 위의 표지 구성 중 ‘사용표지①’ 과 ‘사용표지②’ 가 현저한 식별 부분에 해당하는데, 특히 ‘사용표지②’ 가 원고의 상표②, 상표④와 유사하며 해당 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되어 일반 대중이 혼동할 수 있고, iv) 비록 ‘계쟁 상표’ 가 피고3의 보유 상표일지라도 그 지정 상품	2. 법원의 판결 (2) 피고의 웹사이트·인터넷쇼핑몰에 사용된 표지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5p] 피고가 온라인에서 계쟁표지를 적용한 방식은 세 가지로, 피고2가 운영한 AT(인터넷주소 3 생략) 및 BC 플래그십스토어에 “”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 해당 표지를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와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으로 사용한 것, BC 플래그십스토어의 웹사이트 명칭과 기타 위치에 “AU”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이다. 이 중 기층인민법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용 행태가 원고의 상표②,④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¹⁴⁾ 기층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i) 피고2가 운영한 AT(인터넷주소 3 생략) 및 BC 플래그십스토어에 “”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상품 출처의 기능을 보유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ii) 해당 표지가 피고1의 웹사이트 홍보 및 상품 전시 페이지에 대량으로 표기된 것 역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며, 또한 iii) 위의 표지 구성 중 “” 와 “” 가 현저한 식별 부분에 해당하는데, 특히 “” 가 원고의 상표②,④와 유사하며 해당 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되어 일반 대중이 혼동할 수 있고,



이 의류·모자·신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v) 피고들의 해당 표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련입증이 없는 바, 상표②, 상표④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30)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2가 운영하는 BC 플래그십 스토어의 웹페이지 명칭 및 기타 위치에 ‘AU’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 역시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BE, BF, BG’ 스펠링이 원고 상표와 동일하지만, 영문자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이 자체가 원고 상표②, 상표④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2.3. 피고 1, 2, 3, 4의 민사적 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143p]

기층인민법원은 i) 피고1, 2가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충분히 원고 상표의 인지도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T, BC, BH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ii) 피고3이 B에 출원한 ‘계쟁 상표’는 원고의 상표④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류, 모자,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는데, 피고1, 2, 3이 원고의 선 등록 ‘AO’ 상표를 알면서도 계쟁 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쟁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이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침해

iv) 비록 “” 표지가 피고3의 보유 상표일지라도 그 지정상품이 의류·모자·신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v) 피고들의 해당 표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관련 입증이 없는 바, 상표②, ④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14) 다만 기층인민법원은 피고2가 운영하는 BC 플래그십스토어의 웹페이지 명칭 및 기타 위치에 “AU”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 역시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고 “BE, BF, BG” 스펠링이 원고 상표와 동일하지만, 영문자를 규범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이 자체가 원고 상표②, ④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2. 법원의 판결

(3) 피고 1,2,3,4의 민사적 책임 [6-7p]

또한 기층인민법원은 ii) 피고1,2가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충분히 원고 상표의 인지도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T, BC, BH 및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iii) 피고3이 B에 출원

한 “” 표지는 원고의 상표④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의류, 모자,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는데, 피고1,2,3이 원고의 선 등록 “AO” 상표를 알면서도 계쟁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쟁제품 생산·판매 활동을 지속한



정황이 엄중하므로 피고1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791만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판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1, 2, 3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베이징IP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³¹⁾ 31) 2017)京73民终1991号 민사판결(베이징 IP법원 2018년 3월 5일 선고)	것으로, 이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므로 피고1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791만 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판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1,2,3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베이징IP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²¹⁾ 21) 2017)京73民终1991号 민사판결(베이징 IP법원 2018년 3월 5일 선고)
2.2.3. 판결의 검토 [143p-144p] 대상판결은 동종업계의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혼동 및 오인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 하고 ‘침해의 정황이 엄중’ 하여 그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에 해당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 계쟁 표지의 상표적 사용, ii) 계쟁 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iii) 일반대중의 혼동 가능성, iv) 피고들이 계쟁 표지를 사용한 정당한 사유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여기에서 ‘계쟁 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다.³²⁾ 피고가 사용한 표지 ‘AU’는 비록 원고의 ‘AO’ 상표와 비교했을 때 문자나	Ⅳ. 시사점 [7p-9p] 대상판결은 동종업계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오인·혼동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 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 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에 해당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i) 계쟁 표지의 상표적 사용, ii) 계쟁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iii) 일반대중의 혼동가능성, iv) 피고들이 계쟁표지를 사용한 정당한 사유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여기에서 “계쟁 표지와 등록상표의 유사여부”가 쟁점이었는데 피고가 사용한 표지 “AU”는 비록 원고



발음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상표②’가 조어 상표이고 더불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그 독창성과 현저함이 높으며 인지도 역시 인정되는 바, 이와 유사한 디자인 구성으로 한 글자만 다른 ‘사용표지②’ 표지를 원고 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피고30이 연이어 피고1, 2의 법인대표를 맡고 ‘계쟁상표’의 출원이 원고 상표와의 유사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상품 및 판매플랫폼·홈페이지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는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주관적 악의’가 분명하며 ‘침해의 정황이 엄중’한 것에 속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중국의 <상표법> 제63조는 i)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ii)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 iii) 상표사용허가비용의 배수, iv) 앞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침해행위의 경과 기간·범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사법 당국은 2013년 상표법 제3차 개정을 통하여 고의 침해(恶意侵权)에 해당하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산출된 금액의 3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³³⁾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위의 세 가지 요건(i, ii, iii)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입

의 “AO” 상표와 비교했을 때 문자나 발음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가 조어상표이고 더불어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그 독창성과 현저함이 높으며 인지도 역시 인정되는 바, 이와 유사한 디자인 구성으로 한 글자만 다른 “” 표지를 원고 상표 지정상품과 동일한 “신발”에 적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피고30이 연이어 피고1,2의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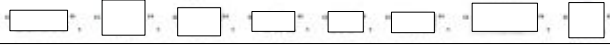
대표를 맡고 “” 표지 출원이 원고 상표와의 유사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상품 및 판매플랫폼·홈페이지에 두드러지게 사용한 행위는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가 분명하며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한 것에 속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결과를 낳았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하여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i)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ii)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 iii) 상표사용허가비용의 배수, iv) 앞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침해행위의 경과기간·범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만 위안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사법 당국은 2013년 상표법 제3차 개정을 통하여 고의 침해에 해당하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산출된 금액의 3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²²⁾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위의 세 가지 요



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체적으로 네 번째 방식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이루어져 왔다.³⁴⁾	건(i, ii, iii) 중 하나라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체적으로 네 번째 방식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본 사안은 유명상표를 모방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치인 3배를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고의 침해에 대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사안은 유명상표를 모방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최대치인 3배를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고의 침해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4) F, “ ‘AO’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AO’ 상표권 침해 사건 -”,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8. 3, 9면.	IV. 시사점 [7p-8p] 대상판결은 동종업계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오인·혼동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 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 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에 해당한다.
IV. 결론 [159p] ‘AO’ 상표권 침해 사건은 등록상표와의 유사정도에 따른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로서, 동종업계의 인지도를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동종 품목에 사용한 경우 그 유사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오인·혼동이 유발되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 하고 ‘침해의 정황이 엄중’ 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에 해당한다.	법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BJ 상표권 침해사건-
요약[131p] ‘BJ’ 상표권 침해 사건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가 관건이었는데,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두 피고가 본 사건의 침해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의 정황이 엄중한 사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	2. 중국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⁶⁾ [p] 항소심에서는 피고1,2가 침해행위 실시 주체인지 및 원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1,078,016.34 위안을 선고하였다.	정이 적절한지가 관건이었다.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두 피고가 본 사건 침해행위의 실시 주체는 아니지만,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惡意侵權에 해당하며 침해 정황이 엄중情势严重한 사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1,078,016.34위안을 선고하였다.¹⁷⁾
3. ‘BJ’ 상표권 침해 사건: 법정 손해배상을 선고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기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3.1. 사건의 개요 [145p] BJ(BJ有限公司)(이하 ‘원고’)는 제25류의 신발·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권리자로, 위의 ‘BJ’ 시리즈 등록상표는 중국 내 장기적인 홍보·사용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였다. ‘BJ’ 35) 상표는 1999년과 2000년에 중국 상표국의 《全国重点商标保护名录》에 등재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원고는 BK, BL대회, BM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의 후원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19년 1월 15일, 원고는 피고1, 2의 신발갑피가 등록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상표 침해 금지 및 침해 물품 폐기처분, 경제적 손실 2,641,695.89 위안과 함께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0,714.8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I. 사건의 경과 [2p-3p] BJ有限公司(이하 ‘원고’)는 제25류 신발·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권리자로,⁵⁾ 위의 “BJ” 시리즈 등록상표는 중국 내 장기적인 홍보·사용을 통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였다. “BJ”⁶⁾ 상표는 1999년과 2000년에 중국 상표국의 《 전국 중점상표 보호목록全国重点商标保护名录 》에 등재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 과정에서 “”가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인정받은 바 있다.⁷⁾ 또한 원고는 BK, BL대회, BM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의 후원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19년 1월 15일, 원고는 피고1,2의 신발갑피가 등록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등록상표 침해 금지 및 침해물품 폐기처분, 경제적 손실 2,641,695.89위안과 함께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0,714.8위안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36) 대상판결은 2021년 3월 중국의 최고 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징벌적 배상의 전형적 사례’의 6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

3.2. 법원의 판결

3.2.1. 기충인민법원의 판결³⁷⁾ [146p]

2019년 5월 13일, 루이안시 인민법원(이하 ‘기충인민법원’)은 본 사안을 심리한 결과 계쟁 제품의 등록상표의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1, 2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 20만 위안(침해행위 저지비용 포함)을 선고하였다.

기충인민법원은 계쟁 제품이 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i) BN社가 생산·판매한 신발 갑피는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품목에 해당하고, ii) 계쟁 제품의 설포(鞋舌), 신발의 코 및 굽의 현저한 위치에 사용된 표지가 기본적으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iii) 신발 갑피에 사용된 표지도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일반대중이 상품 출처에 대해 쉽게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⁸⁾

원고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기충인민법원은 BN社가 침

원고의 등록상표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Ⅲ. 시사점 [7p]

대상 판결은 2021년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징벌적 배상 전형적 사례》 6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²³⁾

Ⅱ 법원의 판결

1. 기충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⁰⁾ [3-4p]

2019년 5월 13일, 루이안시 인민법원(이하 ‘기충인민법원’)은 본 사안을 심리한 결과 계쟁제품의 등록상표 침해를 인정하여, 피고1,2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 20만 위안(침해행위 저지비용 포함)을 선고하였다.

기충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이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i) BN社가 생산·판매한 신발 갑피는 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 품목에 해당하고, ii) 계쟁제품의 설포, 신발코 및 뒷굽의 현저한 위치에 사용된 표지가 기본적으로

로 “”와 동일하며, iii) 신발 갑피에 사용된 표지는

“”, “”, “”, “”와 유사하여 일반대중이 상품 출처에 대해 쉽게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¹¹⁾

원고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기충인민법원은 BN社가 침



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 원고의 등록상표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 ii) 피해 물품의 수량이 많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iii) BN社가 이미 루이안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세 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손해배상액인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상표법제63조 제3항).³⁹⁾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1, 2는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37) (2019)浙0381民初1100号 민사판결서 (루이안시인민법원 2019년 9월 23일 선고)

38) <상표법> 제57조 제2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표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39)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6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침해행위의 성질·기간·결과·상표의 명성, 상표사용 허가비의 금액을 고려하고, 상표사용 허가의 종류·시간·범위 및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사용한 합리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 원고의 등록상표 인지도가 높다는 점, ii) 침해물품 수량이 많지 않아 큰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점, iii) BN社가 이미 루이안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세 차례의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점, iv) 원고가 본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선임비, 공증비, 출장비, 복사·제본비 등¹⁴⁾을 고려하여 법정 손해배상액 2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¹⁵⁾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1,2는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10) (2019)浙0381民初1100号 민사판결서 (루이안시인민법원 2019년 9월 23일 선고)

11) 《상표법》 제57조 제2호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상표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15) 《상표법》 제63조 제3항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6조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이나 피침해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거나 직권에 의거하여 상표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2001년 개정 상표법 제



	56조 제2항은 2013년 개정 상표법 제63조 제3항의 내용과 동일하되, 최대 손해배상액은 50만 위안 이하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행위의 성질·기간·결과(后果)·상표의 명성(声誉), 상표사용허가비의 금액을 고려하고, 상표사용허가의 종류·시간·범위 및 침해행위 저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2.2. 중국인민법원의 판결⁴⁰⁾-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146p-147p] 항소심에서는 원심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가 관건이었다.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두 피고가 본 사건의 침해행위의 주체는 아니지만,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의 정황이 엄중한 사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1,078,016.34 위안을 선고하였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상표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하는 ‘확정하기 어려운’이란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1심 법원이 전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산술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위 규정을 단순 적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침해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20만 위안이라는 미흡한 손해배상액이 선고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를 일부 받아들여 총 345,779.28 위안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산	2. 중국인민법원의 판시사항¹⁶⁾ [5p-6p] 항소심에서는 피고1,2가 침해행위 실시 주체인지 및 원심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절한지가 관건이었다.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두 피고가 본 사건 침해행위의 실시 주체는 아니지만,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惡意侵權에 해당하며 침해 정황이 엄중情节严重한 사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1,078,016.34위안을 선고하였다.¹⁷⁾ 나.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시 《상표법》 제63조 제3항¹⁸⁾이 규정하는 “확정하기 어려운难以确定”이란 기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파악해야 하는데,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1심 법원이 전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위 규정을 단순 적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침해 정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20만 위안이라는 미흡한 손해배상액이 선고됐다고 서술하였다.



출하였다.⁴¹⁾

특히, 원고가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급인민법원은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다고 여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본사건 발생 전,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BN社가 침해 물품의 생산·판매로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세 번째 행정처벌시 단속 기관의 질문에 피고1이 계쟁 제품을 침해 물품인 줄 알면서도 해외 판매용이라며 판로가 좋고 이윤이 높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중급인민법원은 침해에 대한 주관적 악의가 매우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BN社가 2014년 설립 이래 2018년 폐업까지의 기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행정처벌을 받았고 그 사용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일치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급인민법원은 그 침해행위가 지속적이고 규모가 상당하며 악의적이란 측면에서 침해의 정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위에서 산정한 345,779.28위안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상표법 제63조 제1항),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40,678.8 위안을 포함하여 피고1, 2에게 총 107.8만 위안(한화 약 1억8,6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⁴²⁾

40) (2020)浙03民终161号 민사판결서(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41) i) BJ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

한편 원고는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과 관련하여, 중급인민법원은 본 사안이 악의적 침해惡意侵權에 해당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情節严重하다고 여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본 사건 발생 전,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BN社가 침해물품 생산·판매로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세 번째 행정처벌시 단속 기관의 질문에 피고1이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줄 알면서도 해외판매용이라며 판로가 좋고 이윤이 높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중급인민법원은 침해에 대한 주관적 악의가 매우 분명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BN社가 2014년 설립 이래 2018년 폐업까지 기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행정처벌을 받았고 그 사용표지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일치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급인민법원은 그 침해행위가 지속적이고 규모가 상당하며 악질적이란 측면에서 침해 정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위에서 산정한 345,779.28위안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²¹⁾ 원고가 지출한 합리적 비용 40,678.8위안을 포함하여 피고1,2에게 총 107.8만 위안 가량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²²⁾

16) (2020)浙03民终161号 민사판결서(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



매되는 신발의 가격대는 189 위안부터 1,799 위안으로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89 위안을 산출 단가로 삼고, ii) 침해 규모는 세 번째 행정단속 당시 적발된 계쟁 제품 6,050켤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iii) 회계감사 자료상 2017년 원고의 순이익률 50.4%와 iv) BN社가 생산한 계쟁 제품이 반제품 형태인 점을 참작하여 40%의 금액을 삭감한 결과, 총 345,779.28 위안이라는 금액을 도출하였다. 42) $345,779.28 \text{ 위안} \times 3(\text{징벌적 손해배상}) + 40678.8 \text{ 위안}(\text{합리적 비용}) = 1,078,016.64 \text{ 위안}$	<u>[5p]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침해 행위로 입은 손실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였다. i) BJ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가격대는 189위안부터 1,799위안으로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인 189위안을 산출 단가로 삼고,¹⁹⁾ ii) 침해 규모는 세 번째 행정단속 당시 적발된 계쟁제품 6,050켤레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 iii) 회계감사 자료상 2017년 원고의 순이익률 50.4%와 iv) BN社가 생산한 계쟁제품이 반제품 형태인 점을 참작하여 40%의 금액을 삭감한 결과, 총 345,779.28위안이라는 금액을 도출하였다.</u> 21) 《상표법》 제63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표사용허가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서 1배 이상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22) 한화 약 1억8,680만 원에 해당한다. (환율 1RMB=170원 기준) [피고 1,2가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손해배
---	--



	상액] (345,779.28위안× 3배(징벌배상))+ 40678.8 위안(합리적 비용)= 1,078,016.64위안
3.3 판결의 검토 [147p-148p]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침해의 정황이 엄중한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는 2013년 상표법 3차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표 사용의 허가 비용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시스템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2018년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⁴³⁾ 또한, 베이징IP 법원이 선고한 ‘AO’ 상표권 침해 사건을 시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개정된 제4차 상표법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기존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늘리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었다.⁴⁴⁾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확대는 실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⁴⁵⁾ 43) 가령 베이징IP법원의 평균 배상 규모는 2015년 35만 위안이었는데, 2016년에는 76만 위안, 2017년에는 135만 위안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Ⅲ. 시사점 [7p-8p] 한편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침해정황이 엄중한 악의적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는 2013년 상표법 3차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상표사용허가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 사법당국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자국 내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 노력과 함께 2018년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베이징IP법원이 선고한 “AO”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사례가 선고되고 있다.²⁸⁾ 특히 2019년에 개정된 제4차 상표법에서는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기존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늘리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었으며, 가령 베이징IP법원의 평균 배상 규모는 2015년 35만 위안이었는데, 2016년에는 76만 위안, 2017년에는 135만 위안 수준에 도달하였다.²⁷⁾



45) F, “법정 손해배상을 적용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판결 - BJ 상표권 침해사건 -”,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1. 4, 8면.	
Ⅳ. 결론 [159p] ‘BJ’ 상표권 침해 사건은 법정 손해배상을 적용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로서,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확대는 실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Ⅲ. 시사점 [8p] 이처럼 본 사안은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특정 법원의 외국인 당사자의 승소율이 높다고 발표한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확대 역시 중국 사법당국이 부각시키고자 한 부분일 수 있으나, 이유야 어찌 됐든 실제 손해배상액 수준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약 [131p] ‘BO’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경쟁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가 상표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법소득 297,000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594,000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법소득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BO 상표권 침해사건 -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9) [3p]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경쟁제품 생산·판매 행위가 상표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恶意侵犯商标专用权)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을 강화해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위법소득 297,000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594,000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149p] BP(BP씨, 이하 ‘피고2’)를 고용하고 원고의 허가 없이 ‘BR’, ‘BS’, ‘BT’ 등의 표지와 공장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포장 재료(이하 ‘계쟁 제품’)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2019년 3월 6일	I. 사건의 경과 [2p] 2016년 BQ씨(이하 ‘피고1’)는 광둥성 동관东莞市에 공장을 임대하여 BP씨(이하 ‘피고2’)를 고용하고 원고의 허가 없이 “BR”, “BS”, “BT” 등의 표지와 공장 이름 및 주소가 인쇄된 포장 재료(이



및 28일에 각각 117상자와 106상자가 타이위안으로 발송되었고, 297,000 위안의 이익(위법 소득)을 거두었다.

원고는 피고1, 2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뤼량시(吕梁市)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침해행위 중지 및 징벌 손해배상액 594,000위안(위법 소득의 2배)을 청구하였고, 본 사안은 2020년 5월 12일에 입안되었다.



본 사안은 위법 소득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근거로 활용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⁴⁶⁾

4.2. 법원의 판결

4.2.1. 중국인민법원의 판결⁴⁷⁾ [149p-150p]

2020년 8월 4일, 뤼량시(吕梁市)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 2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 상액 594,000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의 계쟁 제품 생산·판매는 상표의 소유권 및 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법> 제57조 제4항 제4호가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무단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앞선 형사판결에서 그로 인한 불

하 ‘계쟁제품’)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2019년 3월 6일 및 28일에 각각 117상자와 106상자가 타이위안으로 발송되었고, 297,000위안의 이익을 거두었다.

원고는 피고1,2를 상대로 등록상표 침해를 이유로 뤼량시吕梁市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침해행위 중지 및 징벌 손해배상액 594,000위안을 청구하였고, 본 사안은 2020년 5월 12일에 입안되었다.



쟁점 [1p]

위법소득을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근거로 활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Ⅱ. 법원의 판결

1. 중국인민법원의 판시사항⁹⁾ [2-3p]

2020년 8월 4일, 뤼량시吕梁市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은 피고1,2의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연대배상 책임을 물어 판결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액 594,000만 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의 계쟁제품 생산·판매는 상표의 소유권 및 사용권자의 허가 없이 《상표법》 제57조 제4항 제4호⁷⁾가 규정하는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무단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더불어 앞선 형사판결에서 그로 인한 불



법 이익 297,000 위안이 인정된 바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2배의 손해배상액 역시 <상표법> 제63조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중급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1은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법 이익 297,000위안이 인정된 바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2배의 손해배상액 역시 《상표법》 제63조8) 규정에 부합하므로,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1은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47) (2020)晋11民初88号 민사판결서(취량시 중급인민법원 2020년 8월 4일 선고) 4.2.2. 고급인민법원의 판결⁴⁸⁾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149p]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경쟁 제품의 생산·판매 행위가 상표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법소득 297,000위안의 2배에 해당하는 594,000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16) (2020)晋民终758号 민사판결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2020년 11월 3일 선고.)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⁹⁾ [3-4p]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두 피고의 경쟁제품 생산·판매 행위가 상표권에 대한 악의적 침해惡意侵犯商標專用權에 해당하므로 배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위법소득 297,000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594,000위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1은 모두 4회의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확정은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왔고, 권리자의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비로소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즉,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양자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으므로 등가로 치환될 수 없는바, 자신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⁹⁾	피고1은 총 네 차례의 상표법 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확정은 권리자가 실제 입은 손실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왔고, 권리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비로소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즉,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양자 간에는 필연성이 없으므로 등가로 치환될 수 없는바, 자신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의 등록상표 표지 불법제조 사실은 위 형사판결에서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의 등록상표 표지 불법 제조 사실은 위 형사판결에서



이미 확인되었고, 이는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법> 제63조에 의해 형사판결을 통해 확인된 위법 소득 (297,000 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액의 선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확인되었고 이는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배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법》 제63조에 따라 형사판결을 통해 확인된 위법소득 297,000위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선고는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8) (2020)晋民终758号 민사판결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2020년 11월 3일 선고)	9) (2020)晋民终758号 민사판결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2020년 11월 3일 선고.)
49) 나아가, 피고1은 <상표법>(2019년 개정) 제63조가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은 권리자가 침해 과정에서 입은 실제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로 입은 실제 손해’를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 1심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1의 침해행위 성립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했음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억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이 판매한 경쟁 제품은 여전히 재고로 쌓여있고 아직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장점유율 또는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바, 본 침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1은 《상표법》(2019년 개정) 제63조가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권리자가 침해 과정에서 입은 실제 손실을 전제로 하는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을 먼저 판정해야 하는데, 1심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1의 침해행위 성립 사실만 입증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했음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률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억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판매한 경쟁제품은 여전히 재고로 쌓여있고 아직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부착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장점유율 또는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없는바, 본 침해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 손실 实际损失”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4.3. 판결의 검토 [150p-151p]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손해배	Ⅲ. 시사점 [5p]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그 손해배



상액의 산정 기준이 혼동될 수 있는데,⁵⁰⁾ 피고1은 본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형사판결을 인용하여 침해자가 얻은 위법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침해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1의 행위를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침해 물품의 단위 수량 당 이익이 아닌 판매가 전제로 삼았다고 판시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

이처럼 본 사안은 등록상표를 도용한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뿐 아니라 민사적 구제도 함께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의 잠재적 침해행위자들에게는 적당한 금액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면피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한 등록상표 도용행위의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⁵¹⁾

50) 형사소송에서의 위법 소득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그 산정 기준이 다소 상이한데, 상표법은 손해배상액의

상액 산정 기준이 혼동될 수 있으며, 피고1 역시 본 사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자신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닌 원고가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기 선고된 형사판결을 인용하여 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침해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1의 행위를 애당초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기준을 침해물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이 아닌 판매가 전제로 삼았다고 설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처럼 본 사안은 등록상표를 도용한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뿐 아니라 민사적 구제도 함께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법 당국의 입장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일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침해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잠재적 침해자들에게는 적당한 금액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면피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한 등록상표 도용행위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소득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은 그 산정 기준이 다소 상이한데, 상표법은 손해배상액 산



산정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받게 된 손실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위법 소득의 산정시 침해자의 침해 물품의 판매가 및 단위수량 당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피침해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정품의 단위 수량 당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특허청·BU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중국, 2014, (인터넷주소 4 생략)(2022년 1월 18일)	정 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받게 된 손실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최고인민검찰원은 위법소득 산정 시 침해자의 침해물품 판매가 및 단위수량당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으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에서 피침해자가 침해로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정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점과는 대조적이다.¹³⁾
51) F, “위법소득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 BO 상표권 침해사건-”,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1. 6, 6면.	13) 특허청·BU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중국” 2014, 166면. (인터넷주소 4 생략)
IV. 결론 [159p] ‘BO’ 상표권 침해 사건은 위법 소득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한 판결로서, 등록상표를 도용한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민사적 구제도 함께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해당한다. 이전에 선고된 형사판결을 인용하여 침해자가 얻은 위법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Ⅲ. 시사점 [6p] 이에 법원은 기 선고된 형사판결을 인용하여 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악의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5. ‘BV’ 상표권 침해 사건: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 판결 5.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51p-152p] BW(이하 ‘원고’)는 2006년 5월 12일에 설립되어 대형목재 바닥재를 취급하는 기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3p-4p] BW(이하 “원고”)는 2006년 5월 12일에 설립되어 대형



업으로, 원고는 이탈리아 BX 작업실로부터 BY, BZ 초상권과 함께 ‘CA’, ‘B X’) 및 제19류 바닥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 상표권과 그에 대한 중국 내 법적 대응 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공식웹사이트로 (인터넷주소 5 생략) 도메인을 사용하는 한편, 제품 겉포장에 ‘生活家·地板홈퍼니싱·바닥재’, ‘生活家·巴洛克地板홈퍼니싱·바로크바닥재’, ‘CB’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포장은 바닥재 제품군에서 ‘특유 포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⁵²⁾

원고는 ① 피고1이 생산한 바닥재(이하 ‘계쟁 제품’)와 홍보책자·대외광고·회사 입구·웹사이트에 단독 또는 조합된 형태로 계쟁 표지가 사용되었고, ② 원고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품명·홍보자료 등이 사용되는 한편, ③ 피고1의 대리점들이 원고의 대리점과 동일한 곳 또는 근접한 곳에 매장을 개설하고, ④ 피고1이 자신의 대리점에게 원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⁵³⁾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본 사안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시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 규모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⁵⁴⁾

목재 바닥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원고는 이탈리아 BX 작업실로부터 BY BZ 초상권과 함께 “CA”, “BX” 자호(字号) 및 제19류 바닥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이하 “상표①”), “” (이하 “상표②”), “” (이하 “상표③”), “” (이하 “상표④”) 상표권과 그에 대한 중국 내 법적 대응 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공식웹사이트로 (인터넷주소 5 생략) 도메인을 사용하는 한편, 제품 겉포장에 “生活家·地板홈퍼니싱·바닥재”, “生活家·巴洛克地板홈퍼니싱·바로크바닥재”, “CB”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포장은 바닥재 제품군에서 특유포장(特有包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원고는 ① 피고1이 생산한 바닥재(이하 “계쟁제품”)와 홍보책자·대외광고·회사입구·웹사이트에 단독 또는 조합된 형태로 계쟁표지가 사용되었고, ② 원고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품명·홍보자료 등이 사용되는 한편, ③ 피고1의 대리점들이 원고의 대리점과 동일한 곳 또는 근접한 곳에 매장을 개설하고, ④ 피고1이 자신의 대리점에게 원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

상표①	상표②	상표③	상표④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52)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는 CC社(이하 ‘피고1’)와 바닥재 OEM 가공 합작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 피고1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명을 ‘CD’로 변경하였고, OEM합작 종료 후 2015년 11월 11일에 다시 ‘CE’라는 현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3) 또한, 원고는 피고1의 대리점인 CF(이하 ‘피고2’)와 CG(이하 ‘피고3’)가 계쟁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할 때 계쟁 상표와 자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함께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1이 판매한 계쟁 제품은 중국 여러 지역에서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해 구매 후 행정부처에 신고 된 기록도 있는 바,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피고1, 2, 3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유명상품 특유포장 무단사용과 허위광고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54) 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이다.	I. 사건의 쟁점 [2p] 본 사안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시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실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규모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다. [3p]2006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는CC社(이하 “피고1”)와 바닥재 OEM 가공 합작을 진행하였다. 2009년에 피고1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명을 “CD”로 변경하였고, OEM합작 종료 후 2015년 11월 11일에 다시 “CE”라는 현 사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⁸⁾ [3p-4p]또한 원고는 피고1의 대리점인 CF(이하 “피고2”)와 CG (이하 “피고3”)가 계쟁제품을 판매하고, 홍보 시 계쟁상표와 자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함께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1이 판매한 계쟁제품은 중국 여러 지역에서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해 구매 후 행정부처에 신고 된 기록도 있는 바,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피고1,2,3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유명상품 특유포장 무단사용과 허위광고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사점 [1p] 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
5.2. 법원의 판결 5.2.1. 중국인민법원의 판결⁵⁵⁾ [152p-153p] 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1. 중국인민법원의 판시사항⁹⁾ [4p] 쑈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



법원')은 세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피고1, 2, 3에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피고1에게는 1,000만 위안, 피고2에게는 피고1과 공동으로 15만 위안, 피고3에게는 피고1과 공동으로 3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1에게 ‘生活家·巴洛克’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기업의 명칭으로 변경을 명령하는 한편, ‘CB’ 문구의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에 피고1은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⁵⁶⁾

55) (2017)粤0112民初5746号 민사판결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17년 5월 4일 선고)

56)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계쟁 제품의 판매는 OEM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물품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상호에 사용한 ‘巴洛克’ 문구는 원고와의 OEM 합작 과정에서 업무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뒤 기업 명칭의 등기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CH’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한 경우 ‘CI’ 는 양식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CJ’ 표기 시 ‘CK’ 를 병기함으로써 출처가 다름을 구분하였으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5.2.2. 고급인민법원의 판결⁵⁷⁾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153p]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장쑤성 고급인민

법원')은

세 피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피고1,2,3에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피고1에게는 1,000만 위안, 피고2에게는 피고1과 공동으로 15만 위안, 피고3에게는 피고1과 공동으로 3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1에게 “生活家·巴洛克”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기업명칭으로 변경을 명령하는 한편,¹⁰⁾ “CB” 문구의 도메인 사용을 금지하였다.

9) (2017)粤0112民初5746号 민사판결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17년 5월 4일 선고.)

[7p] 이에 피고1은 자신의 계쟁제품 판매는 OEM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물품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상호에 사용한 “巴洛克” 문구는 원고와의 OEM 합작 과정에서 업무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뒤 기업명칭 등기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CH”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한 경우 “CI” 는 양식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CJ” 표기 시 “CK” 를 병기함으로써 출처가 다름을 구분하였으므로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²⁰⁾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²¹⁾ [8p]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장쑤성 고급인민



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계쟁 제품을 판매한 것은 OEM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물품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함으로써 자구책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기업의 명칭 및 자호에 ‘CL’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부각시켜 사용한 행위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악의적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선 기업의 명칭 및 자호 변경을 명령하고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CH’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원고와의 합작관계가 종료된 후에 침해행위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합작기간 내에도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바닥재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지속해 온 바, 그 정황이 매우 엄중하므로 피고1에게 징벌적 손

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우선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계쟁제품 판매한 것은 OEM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물품을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함으로써 자구책을 마련한 것生产自救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9p]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기업 명칭企业名称 및 자호字号에 “CL”를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부각시켜 사용한 행위는 주관적 악의가 명백 主观恶意明显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악의적 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선 기업명칭 및 자호 변경을 명령하고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CH”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허위광고虚假宣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²⁵⁾

[10p] 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1이 원고와의 합작관계가 종료된 후에 침해행위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합작기간 내에도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매장을 개설하고 바닥재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지속해온 바, 그 정황이 매우 엄중하므로 피고1에게 징벌적 손해



<u>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u> <u>57) (2017)苏民终1297号 민사판결(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18년 10월 12일 선고)</u>	<u>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u> <u>21) (2017)苏民终1297号 민사판결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2018년 10월 12일 선고.)</u> <u>25)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u>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작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생산지 등에 대하여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허위광고(虚假宣传)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 운영자는 명확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의 대리, 설계, 제작, 배포해서는 안 된다. 《반부정당경쟁법사법해석》 제8조 제1항 경영자는 아래 행위 중 한 가지를 행하여 관련 대중의 오해를 조성하기 충분할 경우, 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허위광고(虚假宣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편파(片面)적인 홍보 또는 비교 (2) 과학적으로 정설(定论)이 아닌 관점, 현상 등을 정설인 사실로 여겨 상품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3) 모호한 언어(歧义性语言)나 기타 오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상품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5.2.3. 판결의 검토 [154p-155p] <u>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고의침해(恶意侵权)의 정황이 엄중하여 법원이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안 가운데 이례적으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에 해당한다.</u>	IV. 시사점 [10-12p] <u>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6) 등록상표에 대한 고의 침해(恶意侵权) 정황이 엄중하여 법원이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안 가운데 이례적으로 ‘권리자가 입은</u>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 행위자의 고실, 객관적인 손해의 사실,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⁵⁸⁾ 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표법> 제63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①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이나 ② 피고가 얻은 이익, ③ 상표사용 허가비용의 배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의 범위·규모·지속 기간이나 미치는 영향 및 침해자들의 고의 여부, 침해받은 상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표분쟁 사법해석 제16조).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 및 실제 영업상의 손해 주장·입증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도 족하여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의한 영업상의 손해가 추정되는 반면,⁵⁹⁾ 중국의 경우 입증에 대한 장벽이 높아 위의 ①, ②, ③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법원이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5조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해오던 실정이었다.

그러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선포되는 추세 가운데,⁶⁰⁾ 2018년 베이징IP법

손실’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에 해당한다.

중국 내 상표 침해 분쟁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타인의 위법한 행위, 행위자의 고실, 객관적인 손해 사실,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²⁷⁾ 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표법》 제63조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①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실이나 ② 피고가 얻은 이익, ③ 상표사용 허가비용의 배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의 범위·규모·지속기간이나 미치는 영향 및 침해자들의 고의 여부, 침해받은 상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²⁸⁾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 및 실제 영업상의 손해 주장·입증과 관련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도 족하여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의한 영업상의 손해가 추정되는 반면,²⁹⁾ 중국의 경우 입증에 대한 장벽이 높아 위의 ①, ②, ③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법원이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5조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해오던 실정이었다.



원이 판시한 ‘AO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달리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침해행위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잠식 가능한 이윤까지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추상적일 수 있는 미래 이윤에 대한 손실이나 상업적 명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함께 참조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한편 주관적 악의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침해를 하는 침해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자세하게 산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겠으며,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잠식 가능한 이윤에 대한 손실까지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향후 상표권자의 권리가 더욱 크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⁶¹⁾

58) AA, 앞의 책, 287면.

5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그러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선고되는 추세 가운데,³⁰⁾ 2018년 베이징IP 법원이 판시한 “AO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달리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침해행위로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법원이 침해행위로 원고가 실제 입은 손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잠식 가능한 이윤까지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즉 손해배상액 산정 시 추상적일 수 있는 미래 이윤에 대한 손실이나 상업적 명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함께 참조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한편 주관적 악의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침해를 실시하는 침해자에게는 징벌적 민사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이처럼 본 사안은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세밀하게 산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겠으며, 실제 손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잠식 가능한 이윤에 대한 손실까지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향후 상표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하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27) AA “중국지식재산권법” AB, 2011, 287면

28) 《상표분쟁사법해석》 제16조, 본문 각주



60) ‘AO’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2018.3.5.).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2019.4.17.) 61) F,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한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0. 2, 12면.	19 참조. 2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및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30) “AO”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2018.3.5. 베이징IP법원 선고.) (인터넷주소 6 생략)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2019.4.17. 베이징IP법원 선고.) (인터넷주소 7 생략)
IV. 결론 [159p-160p] BV’ 상표권 침해 사건은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 판결로서, 등록상표에 대한 고의 침해의 정황이 엄중하여 법원이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안 가운데 이례적으로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판결에 해당한다.	IV. 시사점 [10p] 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법원 5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6) 등록상표에 대한 고의 침해(恶意侵权) 정황이 엄중하여 법원이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안 가운데 이례적으로 ‘권리자가 입은 손실’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에 해당한다.
6. ‘CM’ 상표권 침해 사건: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 6.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55p-156p] CN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CM’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권리자로, CO에 당해 상표를 출원하여 CP에 등록받았다.⁶²⁾ 2014년 6월 10일 CQ社(이하 ‘피고1’)는 원고의 협력사이자 유일한 정품 생산자인 네덜란드 CR社(이하 ‘CR사’)와 중국 내 ‘CM’ 제품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2p-3p] CN社(이하 “원고”)는 제25류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CM”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권리자로, CO에 당해상표를 출원하여 CP에 등록받았다.⁴⁾ 2014년 6월 10일 CQ社(이하 “피고1”)는 원고의 협력사이자 유일한 정품 생산자인 네덜란드 CR社(이하 “CR사”)와 중국 내 “CM” 제품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



목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전자 물 처리기(电子水处理器) 2대를 구입하였다. 2014년 8월 피고1은 CS(이하 ‘CS’)의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 전자 물 처리기 27대(이하 ‘계쟁제품’)가 258만 위안에 낙찰되었다.

2014년 10월 2일, 피고1은 CR사 제품 27대의 구매·설비·설치테스트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사건 제3자인 CT社(이하 ‘제3자’)와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를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서 ‘갑’(피고1)은 ‘을’(제3자)이 수출입 과정의 계약관련 업무를 ‘갑’의 명의로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며, ‘을’은 위 권한을 위임받되 타인의 합법적 권리에 피해를 미쳐선 안 되고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에는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1과 제3자는 CS측에 27대의 계쟁 제품을 납품·시공하였다.

이후 제보를 통하여 원고는 피고1과 제3자가 CS에 계쟁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R사 대표가 직접 CS 내몽고 지사에 방문하여 계쟁 제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CS는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한 다음 계쟁 제품을 임시 보관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CS에 납품한 계쟁 제품이 CR사의 정품이 아닌 자신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섯 피고와 제3자의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공동 배상 794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⁶³⁾

고,⁵⁾ 입찰 목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전자 물 처리기(电子水处理器) 2대를 구입하였다. 2014년 8월 피고1은 CS(이하 “CS”)의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 전자 물 처리기 27대(이하 “계쟁제품”)가 258만 위안에 낙찰되었다.

2014년 10월 2일, 피고1은 CR사 제품 27대의 구매·설비·설치테스트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사건 제3자인 CT社(이하 “제3자”)와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를 체결하였다.⁶⁾ 본 계약에서 “갑”(피고1)은 “을”(제3자)이 수출입 과정의 계약관련 업무를 “갑”의 명의로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며, “을”은 위 권한을 위임받되 타인의 합법적 권리에 피해를 미쳐선 안 되고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에는 모든 배상 책임을 부담키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15일과 2015년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1과 제3자는 CS측에 27대의 계쟁제품을 납품·시공하였다.

이후 제보를 통하여 원고는 피고1과 제3자가 CS에 계쟁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R사 대표가 직접 CS 내몽고 지사에 방문하여 계쟁제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CS는 이 과정을 모두 녹화한 다음 계쟁제품을 임시 보관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CS에 납품한 계쟁제품이 CR사의 정품이 아닌 자신의 등록상표 침해물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섯 피고와 제3자의 즉각적인 침해행위 중지 및 공동 배상 794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에 제기



[원고의 등록상표 호]

- 제11류 : 물 필터기, 물 정화 설비 및 기기, 물 연화 설비 및 장치

등록

본 사안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 성립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62) 원고 ‘CN’ 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6.2. 법원 판결

6.2.1. 기층인민법원의 판결⁶⁴⁾ [156p-157p]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CM’ 가 표기된 계쟁 제품 27대의 판매 및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의 경제적 손실인 정품 27에 해당하는 금액 543,560위안과 침해행위의 저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18만 위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723,560 위안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하여,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이 정품 2대를 구매하고 CR사로부터 취득한 수권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납품은 계쟁 제품으로 공급한 바, 이는 피고1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계쟁 제품의 수량이 많으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懲罰性賠償)의 대상임을 강조하였다(상표법 제63조 제1항).

이에 불복한 피고1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1의 악의가 명

하였다.⁸⁾

[원고의 등록상표 호]

- 제11류 : 물 필터기, 물 정화 설비 및 기기, 물 연화 설비 및 장치

등록

I. 사건의 쟁점[2p]

본 사안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 성립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4) 원고 “CN” 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1. 기층인민법원의 판시사항⁹⁾ [3p-5p]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이하 “기층인민법원”)은 피고1에게 “CM” 가 표기된 계쟁제품 27대의 판매 및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원고의 경제적 손실 543,560위안과 침해저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 180,000위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723,560 위안을 선고하였다.

특히 기층인민법원은 v) 피고1이 정품 2대를 구매하고 CR사로부터 취득한 수권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납품은 계쟁제품으로 공급한 바, 이는 피고1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고자 한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고, 계쟁제품의 수량이 많으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懲罰性賠償) 대상임을 강조하였다.¹⁶⁾

이에 불복한 피고1은 베이징IP법원에 항소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1의 악의가 명백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침해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백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하므로 침해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 IP법원에 손해배상액 13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4) (2016)京0107民初16771号 민사판결(베이징시 스징산구 기층인민법원 2018년 3월 26일 선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IP법원에 손해배상액 130만 위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 (2016)京0107民初16771号 민사판결 (베이징시 스징산구 기층인민법원 2018년 3월 26일 선고.) 16) 《상표법(2014년 시행)》 제63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사용허가 비용의 배수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액수에서 1배 이상 3배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6.2.2. 베이징 IP법원의 판결⁶⁵⁾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158p]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베이징IP법원은 양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의 행위가 등록상표 침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유일한 정품 제조사인 CR가 감정한 결과 CS에 납품된 계쟁 제품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피고1이 입찰에 필요한 수권서 취득을 목적으로 정품 2대를 선구	2. 베이징IP법원의 판시사항¹⁷⁾ [5p-6p] 항소심에서는 피고1의 행위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정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베이징IP법원은 양 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의 행위가 등록상표 침해라고 인정한 이유에 대하여, 유일한 정품 제조사인 CR가 감정한 결과 CS에 납품된 계쟁제품은 정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피고1이 입찰에 필요한 수권서 취득을 목적으로 정품 2대를 선구



매한 뒤 본 사건 제3자를 통해 다른 경로로 계쟁 제품을 매입하여 CS에 납품한 점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액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고1은 계쟁 제품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⁶⁶⁾ 베이징IP법원은 i) 피고1이 지속적으로 CR사가 제조한 정품을 CS에 납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피고들로부터 계쟁 제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침해물품인지 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합법적 출처의 항변(合法来源抗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베이징IP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1이 지속적으로 CR사를 통하여 정품을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채널로 계쟁 제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과실(过失的过错)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됨에 부당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침해행위로 피고1이 얻은 이익이나 원고가 입은 손실 확정이 어려우므로, 피고1의 주관적 악의, 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고1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측면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상표법 제63조 제3항).

65) (2018)京73民终2132号 민사판결(베이징IP법원 2019년 4월 17일 선고)

66) <상표법>(2014년 시행) 제64조 제2항

매한 뒤 본 사건 제3자를 통해 다른 경로로 계쟁제품을 매입하여 CS에 납품한 점은 과실이 있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액 적정성과 관련하여 피고1은 계쟁제품이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¹⁸⁾ 베이징IP법원은 i) 피고1이 지속적으로 CR사가 제조한 정품을 CS에 납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피고들로부터 계쟁제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침해물품인지 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합법적 출처의 항변(合法来源抗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이유에 대하여, 베이징IP법원은 피고1이 지속적으로 CR사를 통하여 정품을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제3자에게 위탁하여 다른 채널로 계쟁제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과실(过失的过错)에 해당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적용됨에 부당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침해행위로 피고1이 얻은 이익이나 원고가 입은 손실 확정이 어려우므로, 피고1의 주관적 악의, 행위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손실 보상 및 피고1의 행위에 대한 징벌 측면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²⁰⁾

17) (2018)京73民终2132号 민사판결 (베이징IP법원 2019년 4월 17일 선고.)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상표법(2014년 시행)》 제64조 제2항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 《상표법(2014년 시행)》 제63조 제3항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상표사용 허가비용(注册商标许可使用费)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경위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6.3. 판결의 검토 [158p] 본 사건은 중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최신 사례 중 하나로, 고의 침해의 여부에 따라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는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실제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상표권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의 이익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표 사용에 대한 허가비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반적인 침해 상황, 즉 침해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고의 여부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산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의 침해의 정황이 엄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⁶⁷⁾	Ⅳ. 시사점 [6p-7p] 본 사건은 중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최신 사례 중 하나로, 고의 침해 여부에 따라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는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산정 시,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실제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상표권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의 이익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표 사용에 대한 허가비용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역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반적인 침해 상황, 즉 침해기간 및 규모, 침해자의 고의 여부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산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의침해의 정황이 엄중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사안에서 피고1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제3자를 설립하고 제3자와의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 계약을 통하여 경쟁 제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1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3자로 귀속되게 설정해둠으로써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피고1은 합법적인 매매계약 절차로 ‘합리적 출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피고1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적인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 판단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악의적인 경우 결국 성립이 불가함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고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⁶⁸⁾

67) 우리나라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정(제107조 제7항)을 2020년에 신설한 것에 비하여, 중국은 이미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하였으며, 당시 최고 50만 위안이던 손해배상액을 한 차례 상향 조정하여 현행 상표법(2013년 개정) 제63조는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 300만 위안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 개정되어 11월 1일에

본 사안에서 피고1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 제3자를 설립하고 제3자와의 《구매 및 기술서비스 협의》 계약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1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제3자로 귀속되게 설정해둠으로써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피고1은 합법적인 매매계약 절차로 “합리적 출처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피고1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적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 판단은 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취지가 악의적인 경우 결국 성립이 불가함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고의침해에 대한 사법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이미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하였으며, 당시 최고 50만 위안이던 손해배상액을 한 차례 상향 조정하여 현행 상표법(2013년 개정) 제63조는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对恶意侵犯商标专用权, 情节严重的)” 300만 위안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 개정되어 1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제4차 상표법은 최근 침해규모에 비해



시행 예정인 제4차 상표법은 최근 침해 규모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을 보완하고자, 중국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힘입어 최고 500만 위안 이내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차 상향 조정되었다. 68) F, “고의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베이징IP법원 판결”, 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9. 8, 7면.	손해배상액의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을 보완하고자, 중국 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힘입어 최고 500만 위안 이내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차 상향 조정되었다.
IV. 결론 [160p] ‘CM’ 상표권 침해 사건은 고의 침해를 인정하여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을 배척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로서, <u>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성립이 불가함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u>	IV. 시사점 [7p] 이와 같은 법원 판단은 <u>합법적 출처의 항변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그 취지가 악의적인 경우 결국 성립이 불가함을 단호하게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고의침해에 대한 사법의회지가 강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겠다.</u>